

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(안)

의 번	안 호	107
--------	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. 6.

제출자 : 안산시장

1. 제안이유

주민의 공과금 납부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 지방행정 공공서비스의 영역 확대

및 경비의 절감으로 경영합리화 도모

2. 주요골자

○ 목적 (안 제1조)

이 조례는 상.하수도료, 전기료, 도시가스료, 폐기물수집수수료, 텔레비전

방송수신료(이하 "통합공과금"이라 칭한다)의 효율적 과정으로 주민의

편의증진 도모

○ 회계관련 주요규정

- 이 특별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함 (안 제4조)

- 수입은 타회계의 전입금과 위탁기관의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함
(안 제7조)
- 지출은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, 전산처리비, 관리비, 기타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함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지방공기업법 제5조

나. 예산상황

- 통합공과금 확대준비 예산 확보 : '92. 4. 18
- 위탁기관별 준비경비 부담액 확정 : '92. 7. 31
- 위탁기관으로 부터 준비경비 부담금이체 : '92. 8. 31

다. 참고자료 : 내부부조례준칙(안) 사본

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상.하수도료, 전기료, 도시가스료, 폐기물수집수수료, 텔레비전방송수신료 (이하 "통합공과금"이라 한다)의 효율적 과징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 통합공과금과징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공과금과징을 위한 검침.실사.조정.민원 처리와 전산시설에 의한 고지서발급.송달 및 징수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에 한한다.

제3조(관리자) ① 이 특별회계의 업무를 관리.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둔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총무국장으로 한다.

제4조(독립채산) 이 특별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회계년도) 이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.

제6조(일시차입금) ① 이 특별회계의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입)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타회계의 전입금과 위탁기관(한국전력공사, 한국방송공사, 도시가스회사)의 부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
제8조(지출)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, 전산처리비, 관리비, 기타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제9조(예비비)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

제10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타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2 - 1

00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상. 하수도료, 전기료, 도시가스료, 폐기물수집수수료, 텔레비전방송수신료 (이하 "통합공과금"이라 한다)의 효율적 과징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를 제5조의 규정에 의거 00시 통합공과금과징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공과금과징을 위한 검침. 실사. 조정. 민원 처리와 전산시설에 의한 고지서발급. 송달 및 징수등을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에 한한다.

제3조(관리자) ①이 특별회계의 업무를 관리.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를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총무국장(부시장)으로 한다.

제4조(독립채산) 이 특별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회계년도) 이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.

제6조(일시차입금) ① 이 특별회계의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당해 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입) 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타회계의 전입금과 위탁기관 (한국전력공사, 한국방송공사, 도시가스회사)의 부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
제8조(지출) 이 특별회계의 지출은 통합공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인건비, 전산처리비, 관리비, 기타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제9조(예비비)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

제10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